

[별표 3] <개정 2005.9.26>

유량계 설치 및 관리기준(제9조의3제1항관련)

1. 유량계는 당해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정수장의 유출부에 설치하여야 한다.
2.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는 다음 각목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 - 가. 유량변동이 유량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, 유량자료에 대한 저장기능(저장용량은 1일 150개 이상의 자료를 3개월 동안 저장가능하여야 한다)을 갖추거나 유량데이터의 원격전송(TM)이 가능하여야 한다.
 - 나. 유량계의 허용오차범위는 지시정확도가 $\pm 2\%$ 이내이어야 한다. 다만, 유량계로서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수도미터(이 별표 3에서는 유량계로 본다)를 설치한 경우 이의 허용오차범위는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3. 유량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 - 가. 유량실을 박스식 또는 흡관식으로 제작·설치하여야 한다.
 - 나. 고장시 수리 및 타기계로 측정가능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, 추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 - 다. 침수될 수 있는 곳인 경우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평탄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.
 - 라. 유량계 검출기(Sensor) 설치 위치의 중심을 기점으로 상류측에는 관직경의 3배 이상의 거리, 하류측에는 2배 이상의 거리의 직관부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 - 마. 직관부내에는 밸브등 유량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 없어야 한다.
 - 바. 정전시 최소 24시간이상 계량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4. 유량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 - 가. 설치된 유량계는 유량계 파손여부, 유량계 접합부등에서 누수여부 및 유량계 실 침수상태등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.
 - 나. 설치된 유량계는 연 1회 이상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3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교정을 받거나 오차시험을 하여야 한다.
 - 다. 유량자료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을 하여야 한다.